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-113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1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사회복지시설의 명칭, 위치 및 주요 기능을 고시로 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신속한 현행화 도모
- 나. 불필요한 규정 삭제

2. 주요내용

- 가. 사회복지시설 설치 명단 별표 명사에서 구청장 고시로 변경
 - 제3조의 [별표]와 같 다를 구청장 고시로 변경
 - 제3조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용어 처음 등장하여 제5조에서는 약칭 사용
 - [별표] 삭제
- 나. 불필요한 규정 삭제 : 제11조(시행규칙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3. 7. 13. ~ 8. 2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- 5) 제1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3.8.16.) 결과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이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의 명칭, 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“**별표와 같다**”를 “**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정하여 고시한다**”로 한다.

제5조 “**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**”을 “**구청장은**”으로 한다

제11조를 삭제한다.

[별표] 사회복지시설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시설의 설치) 이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의 명칭, 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<u>별표와 같다.</u></p> <p>제5조(운영의 위탁 등) ①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</u> -----</p> <p><u>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[별표] 사회복지시설</u></p>	<p>제3조(시설의 설치) 이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의 명칭, 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</p> <p>제5조(운영의 위탁 등) ① <u>구청장</u>은 -----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<u>[별표] 삭제</u>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의 신속한 현행화 도모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동행국 주민생활복지과 최자윤
연 락 처	02-3153-8832